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신설함.

○ 가산점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추가함(안 제25조의2제6호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함.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 업무를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의 범위를 별표 15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로 규정함.

다. 출산·양육 친화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신설함(안 제38조 신설).

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변경함(안 별표 15).

○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신설(근무 시점부터 월 0.02점)

○ 재난안전관리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변경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월 0.05점 → 근무 시점부터 월 0.02점

마.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15).

○ 시군종합평가 우수 부서(2-11) 정량지표 가산점 부여기준 세분화

- S등급 달성 시군 수: 단독 1위 1.0점 / 7개 이하 0.6점 / 8개~17개 0.4점 / 18개~전 시군 0.2점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제32조, 제33조의2 및 제38조의4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2026. 11. 20. ~ 12. 10.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2026. 1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부패영향평가서, 성별영향평가서, 규제영향평가서(예정)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25조의3 중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 업무) ①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5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를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별표 15에 따라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를 말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3.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 940-4122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희 진
	인 사 팀 장	안 성 준
	담 당 자	유 영 재

[별표 15] <개정 2025. 4. 30.>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 가산점 구분표(제25조의3 관련)

1. 자격증 등 가산점 부여 기준

가. 그 밖의 자격증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정보보안)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정보보안)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위의 표 1)부터 3)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table>
<tr><td rowspan="3">특수지
근무</td><td colspan="2">구분</td><td colspan="2">지역 및 등급</td></tr>
<tr><td colspan="2"></td><td>갑지</td><td>을지</td></tr>
<tr><td colspan="2">지역</td><td>군내면 백연리</td><td>파평면 금파리
적성면 마지리</td></tr>
<tr><td colspan="2">부여가점
(월당)</td><td>0.018점</td><td>0.013점</td></tr>
<tr><td>인사교류</td><td colspan="4">최초 교류임용일로부터 매월 0.1점</td></tr>
<tr><td rowspan="3">특정업무</td><td>사회복지
업무</td><td colspan="3">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로서, 계급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점 부여
가점 : 2년 초과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td></tr>
<tr><td>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td><td colspan="3">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제11호카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
가점 :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td></tr>
<tr><td>격무·기피
민원 업무</td><td colspan="3">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제11호가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팀)에 선정된 업무
가점 :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td></tr>
</table>

3.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1. 업무관련 제안(창안)	1-1 정부제안 및 도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 려	 1.2 1.0 0.8 0.6	• 주관부서(행안부, 경기도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공동제안시 기여도에 따라 가점 배분
	1-2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 려	 1.0 0.8 0.6 0.4	• 업무제안심사 주관부서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공동제안시 기여도에 따라 가점 배분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1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전국 시·군·구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각1.0 각0.5 각0.3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2 경기도 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도내 전체 시·군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각0.5 각0.3 각0.2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3 자체 시책사업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로 선정 • 우수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수자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각0.5 각0.3 각0.2 0.5 0.3 0.2	• 시 소속 전체부서 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또는 반기1회 평가하는 사업만 해당 •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 평가부서별 자체계획에 반영한 가점을 우선으로 부여함. (단,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2-4 중앙단위 언론기관이 수여하는 봉사상 수상자	1.0	• 주관부서(언론기관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5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 장관 표창	 1.0 0.8 0.6 0.4 0.2	• 상훈 주관부서의 상훈대장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6 신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독창적인 조례 제정자(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 • 법령의 위임 및 표준안(준칙안)인 경우 제외 - 전국 최초 창안조례 - 도단위 최초 창안조례	 1.0 0.5	• 조례제정 주관부서의 명단 통보 또는 해당부서에서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7 경영행정 유공자 • 수익사업 발굴 및 수익증대 - 50억 이상 - 30억 이상 50억 미만 - 10억 이상 30억 미만 - 5억 이상 10억 미만	 1.0 0.6 0.4 0.2	• 국비 도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 공모주관부서에서 증빙자료 및 추천명단을 인사부서에 제출
	• 예산절감 - 5억원이상 절감 - 2억원이상~5억원 미만 - 1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 0.3 0.2	• 업무와 관련, 평정대상기간내에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예산 절감사항에 대하여 국·소·본부장이 추천 • 제안제도(창안)와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8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자체 평가결과 우수 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0.3 0.2 0.1	• 시 소속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평가 • 평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부서를 인사부서에 통보 • 업무추진 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9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0.5 0.3 0.2	• 시 소속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평가 • 평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부서를 인사 부서에 통보 • 업무추진 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10 기타 시정 당면주요시책 등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인정한 자 •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 기준 3%이내 인원 추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각0.5	• 평정단위별 5급이하 일반직 현원의 3% 산출시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추천 • 해당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추천
	2-11 시군종합평가 우수 부서 • 정량지표(S등급 달성 시군) - 단독달성 - 7개 이하 - 8개 ~ 17개 이하 - 18개 ~ 전시군	 1.0 0.6 0.3 0.2	• 대상 : 담당자 및 팀장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로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부서에 통보 • 복수 지표일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정성·정량 통합 적용)
	• 정성지표 - 경기도 최종 사례 선정 - 경기도 예비사례 선정 - 경기도 병합사례 선정	 1.0 0.6 0.4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3. 친절도 평가우수	3-1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자 • 우수공무원(만점자)	0.3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3-2 친절공무원 선발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0.3 0.2 0.1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4.격무·기피팀 근무자우대	4-1 격무·기피팀 근무 • 평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자 - 1년 6개월 미만 실 근무 - 1년 6개월 이상 실 근무	 월당 0.1 월당 0.15	• 대상 - 격무·기피팀 근무 6급 이하 공무원 - 평정 대상기간 내 3개월 이상 격무·기피팀에서 실 근무자 • 해당 평정기간 동안 교육,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계산
5.출산공무원 우대	5-1 다자녀공무원 우대 •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1.0 0.5	• 증빙서류 첨부하여 본인이 1년 이내신청 •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재직중의 상태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첫회 평정시 적용 ※ 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1년 이내 신청
6. 자원봉사 활동우수	6-1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30시간이상 • 20시간이상 • 10시간이상	 0.3 0.2 0.1	• 증빙서류 첨부하여 본인이 신청 - 증빙서류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자원봉사센터 발급) ※ 시 주관·지원하는 행사·축제 봉사실적은 불인정(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고 본인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봉사실적은 인정)

※ 2-1, 2-2, 2-3, 2-5, 2-8, 2-9, 2-10, 2-11, 3-1, 3-2, 4-1 상호간 중복가점 불가

4.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점수/1개월	비고
3년 초과 4년 미만	0.1점	• 인사부서 임용발령 사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4년 이상 5년 미만	0.12점	
5년 이상	0.15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

<신 설>	제25조의4(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 업무) ①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5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를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별표 15에 따라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를 말한다.
<신 설>	제38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전출 제한 등)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5. 1. 7.>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2026. 4. 7.>

1. ~ 4. (생 략)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생략)

③ ~ ⑧ (생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2020. 7. 28., 2024. 6. 27., 2026. 4. 7.>

1. ~ 2. (생 략)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2년

4. 제3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⑤ ~ ⑨ (생 략)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한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4. 7.>

⑤ ~ ⑥ (생 략)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2023. 6. 23.>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6. 4. 7.>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2020. 9. 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8. 5. 10., 2020. 9. 10.>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0. 9. 1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장제목 개정 2013. 5. 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9. 2. 18., 2021. 1. 2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07. 11. 9., 2013. 5. 14., 2014. 4. 1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4. 1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7. 21.,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2016. 3. 2., 2017. 5. 26., 2021. 1. 26.>

1. 근속승진임용이나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7. 삭제 <2014. 4. 18.>
8. 삭제 <2013. 5. 14.>
9.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임용
10.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본조 신설 2016. 3. 2.]

제2장 시험 [장제목 개정 2013. 5. 14.]

제4조

삭제 <2014. 4. 18.>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② 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2019. 2. 18.>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9. 2. 1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17. 5. 26., 2024. 1. 12.>

1.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개정 2017. 5. 26., 2021. 1. 26., 2022. 11. 30., 2024. 1. 12., 2024.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 7. 22.,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9. 2. 18.>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6, 2013. 5. 14.,

2014. 4. 18., 2023. 5. 9.>

1. 삭제 <2023. 5. 9.>

2. 삭제 <2014. 4. 18.>

[제목개정 2012. 3. 16.]

제9조

삭제 <2011. 1. 2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1., 2012. 3. 16., 2013. 5. 14.>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라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

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26.>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6., 개정 2013. 5. 14., 2013. 7. 26., 2016. 3. 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신설 2012. 3. 16., 개정 2013. 5. 14., 2013. 7. 2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개정 2024. 1. 1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한다. <단서신설 2007. 11. 9., 개정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9. 2. 1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③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22. 11. 30.>

[제목개정 2014. 4. 18.]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1. 26.>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2016. 3. 2.>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2021. 1. 26.>

④ 삭제 <2021. 1. 26.>

제15조

삭제 <2013. 7. 26.>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

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4. 4. 18.>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7. 22., 2007. 11. 9., 2009. 5. 29., 2011. 1. 21., 2012. 3. 16., 2013. 7. 26., 2014. 4. 18.>

1. 삭제 <2006. 7. 21.>

2. 삭제 <2006. 7. 21.>

3. 삭제 <2006. 7. 21.>

4. 삭제 <2006. 7. 2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9. 5. 29., 2012. 3. 16., 2013. 7. 26., 2014. 4. 18.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되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09. 5. 29., 2011. 1. 21., 2012. 3. 16., 2013. 7. 26., 2021. 1. 2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29., 2012. 3. 16., 2013. 7. 26.>

⑦ 삭제 <2006. 7. 21.>

⑧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5. 26.>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4. 18.>

[제목개정 2012. 3. 16.]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

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의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조치

[본조신설 2024. 1. 12.]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내용 중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2014. 4. 18.>

③ 삭제 <2021. 1. 26.>

[제목개정 2014. 4. 18.]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 2021. 1. 26.>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

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7. 21., 2007. 11. 9., 2009. 5. 29., 2012. 3. 16.>

[제목개정 2013. 5. 14.]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5. 14.>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3. 5. 14.>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3. 5. 14.>

⑤ 삭제 <2019. 2. 18.>

⑥ 삭제 <2019. 2. 18.>

[제목개정 2014. 4. 18.]

제3장 임용 [장제목 개정 2013. 5. 14.]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③ <삭제 2017. 5. 26.>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3. 5. 14.>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 3. 1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할 경우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 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3. 16.>

제25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가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7. 22.,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1996. 7. 22., 개정 2012. 3. 16., 2013. 5. 14.>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2021. 1. 26.>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11. 9.,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8. 2. 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06. 7. 21.]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 1. 26.>

[전문개정 2017.5.26]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07. 11. 9., 2012. 3. 16., 2014. 4. 18., 2016. 3. 2.><단서 신설 2021. 1. 26.>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 1. 26.]

제27조

삭제 <2006. 7. 21.>

제28조

삭제 <2006. 7. 21.>

제28조의2

삭제 <2016. 3. 2.>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3. 5. 14., 2014. 4. 18.>

[제목개정 2019. 2. 18.]

제30조(시·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파주시(이하 "시"로 한다)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의 보충은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6. 3. 2.>

제31조(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8. 2. 9.>

② 제1항의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시 본청에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2007. 11. 9., 2013. 5. 14.>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제33조

삭제 <2006. 7. 21.>

제34조

삭제 <2006. 7. 21.>

제3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6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5. 26., 개정 2019. 2. 18., 2021. 1. 26.>

제37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동일계급 공무원 및 하위계급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직무태도, 리더십 등 개인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에 참고로 활용하고, 교육훈련·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28.]

[별표 15] <개정 2025. 4. 30.>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 가산점 구분표(제25조의3 관련)

1. 자격증 등 가산점 부여 기준

가. 그 밖의 자격증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건설안전)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정보보안)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정보보안)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부항해 운영 선부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 직렬	연 구 사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위의 표 1)부터 3)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table>
<tr><td rowspan="3">특수지
근무</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지역 및 등급</td></tr>
<tr><td>갑지</td><td>을지</td></tr>
<tr><td>지역</td><td>군내면 백연리</td><td>파평면 금파리
적성면 마지리</td></tr>
<tr><td>부여가점
(월당)</td><td>0.018점</td><td>0.013점</td></tr>
<tr><td>인사교류</td><td colspan="3">최초 교류임용일로부터 매월 0.1점</td></tr>
<tr><td>특정업무</td><td colspan="3">사회복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
※ 사회복지업무 담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제11호 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
※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1호카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td></tr>
</table>

3.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1. 업무관련 제안(창안)	1-1 정부제안 및 도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 려	 1.2 1.0 0.8 0.6	• 주관부서(행안부, 경기도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공동제안시 기여도에 따라 가점 배분
	1-2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 려	 1.0 0.8 0.6 0.4	• 업무제안심사 주관부서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공동제안시 기여도에 따라 가점 배분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1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전국 시·군·구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각1.0 각0.5 각0.3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2 경기도 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도내 전체 시·군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각0.5 각0.3 각0.2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3 자체 시책사업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로 선정 • 우수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수자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각0.5 각0.3 각0.2 0.5 0.3 0.2	• 시 소속 전체부서 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또는 반기1회 평가하는 사업만 해당 •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 평가부서별 자체계획에 반영한 가점을 우선으로 부여함. (단,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2-4 중앙단위 언론기관이 수여하는 봉사상 수상자	1.0	• 주관부서(언론기관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5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 장관 표창	 1.0 0.8 0.6 0.4 0.2	• 상훈 주관부서의 상훈대장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6 신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독창적인 조례 제정자(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 • 법령의 위임 및 표준안(준칙안)인 경우 제외 - 전국 최초 창안조례 - 도단위 최초 창안조례	 1.0 0.5	• 조례제정 주관부서의 명단 통보 또는 해당부서에서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7 경영행정 유공자 • 수익사업 발굴 및 수익증대 - 50억 이상 - 30억 이상 50억 미만 - 10억 이상 30억 미만 - 5억 이상 10억 미만	 1.0 0.6 0.4 0.2	• 국비 도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 공모주관부서에서 증빙자료 및 추천명단을 인사부서에 제출
	• 예산절감 - 5억원이상 절감 - 2억원이상~5억원 미만 - 1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 0.3 0.2	• 업무와 관련, 평정대상기간내에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예산 절감사항에 대하여 국·소·본부장이 추천 • 제안제도(창안)와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8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자체 평가결과 우수 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0.3 0.2 0.1	• 시 소속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평가 • 평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부서를 인사부서에 통보 • 업무추진 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9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담당팀장(1), 실무자(1)	0.5 0.3 0.2	• 시 소속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평가 • 평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부서를 인사 부서에 통보 • 업무추진 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10 기타 시정 당면주요시책 등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인정한 자 •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 기준 3%이내 인원 추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각0.5	• 평정단위별 5급이하 일반직 현원의 3% 산출시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추천 • 해당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추천
	2-11 시군종합평가 우수 부서 • 정량지표 - 지표 내 단독 1위 - 지표 내 공동 1위(시군 5개 이하) - 지표 내 공동 1위(시군 6개 이상)	 1.0 0.6 0.4	• 대상 : 담당자 및 팀장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로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부서에 통보 • 복수 지표일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정성 · 정량 통합 적용)
	• 정성지표 - 경기도 최종 사례 선정 - 경기도 예비사례 선정 - 경기도 병합사례 선정	 1.0 0.6 0.4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3. 친절도 평가우수	3-1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자 • 우수공무원(만점자)	0.3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3-2 친절공무원 선발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0.3 0.2 0.1	• 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4.격무·기피팀 근무자우대	4-1 격무·기피팀 근무 • 평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자 - 1년 6개월 미만 실 근무 - 1년 6개월 이상 실 근무	 월당 0.1 월당 0.15	• 대상 - 격무·기피팀 근무 6급 이하 공무원 - 평정 대상기간 내 3개월 이상 격무·기피팀에서 실 근무자 • 해당 평정기간 동안 교육,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계산
5.출산공무원 우대	5-1 다자녀공무원 우대 •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1.0 0.5	• 증빙서류 첨부하여 본인이 1년 이내신청 •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재직중의 상태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첫회 평정시 적용 ※ 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1년 이내 신청
6. 자원봉사 활동우수	6-1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30시간이상 • 20시간이상 • 10시간이상	 0.3 0.2 0.1	• 증빙서류 첨부하여 본인이 신청 - 증빙서류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자원봉사센터 발급) ※ 시 주관·지원하는 행사·축제 봉사실적은 불인정(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고 본인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봉사실적은 인정)

※ 2-1, 2-2, 2-3, 2-5, 2-8, 2-9, 2-10, 2-11, 3-1, 3-2, 4-1 상호간 중복가점 불가

4.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점수/1개월	비고
3년 초과 4년 미만	0.1점	• 인사부서 임용발령 사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4년 이상 5년 미만	0.12점	
5년 이상	0.15점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67)

1. 행정지원과-32865(2026.11.19)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통보서(2026A경기파주067) 1부. 끝.

여 성 가 족 과 장 김영미

여성정책전문위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연가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2026. 11. 19.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3081 (2026. 11. 19.) 접수 행정지원과-32932 (2026. 11. 1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황민구	전화번호	031-940-41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행정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1. 행정지원과-32635(2026. 11. 17.)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68	행정지원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사2팀장	이선	감사관	전결 2026. 11. 18.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3834 (2026. 11. 18.) 접수 행정지원과-32743 (2026. 11. 18.)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8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유영재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안)

1. 행정지원과-32600(2026. 11. 17.)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행정지원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팀장 김선정 의회법무팀장 대결 2026. 11. 17. 정은애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21370 (2026. 11. 17.) 접수 행정지원과-32682 (2026. 11.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 당	팀장 안성준 담당자 유영재
3. 관련법령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제32조, 제33조의2 및 제38조의4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4. 주요골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특별승진임용 기준 추가(안 제25조의2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 업무 규정(안 제25조의4)**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의 범위를 별표 15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받는 업무로 규정함. **다. 출산·양육 친화적 인사운영을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 신설(안 제38조)** **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신설·변경(안 별표 15)** ○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신설 (근무 시점부터 월 0.02점) ○ 재난안전관리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변경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월 0.05점 → 근무 시점부터 월 0.02점 **마.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변경(안 별표 15)** ○ 시군종합평가 우수 부서(2-11) 정량지표 가산점 부여기준 세분화 - S등급 달성 시군 수: 단독 1위 1.0점 / 7개 이하 0.6점 / 8개~17개 0.4점 / 18개~전 시군 0.2점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사항 반영, 전출 제한 예외기준 신설 및 가산점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인사운영과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